

포르투갈 ABS 법 Decreto-Lei-122-2017-ABS(한국어)¹⁾

법령 No. 122/2017 2017년 9월 21일

포르투갈에서 1993년 6월 21일자 법령 No. 21/93에 의해 비준된 생물다양성협약(CBD)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유전자원 이용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면서도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에 관한 주요한 국제문서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은 관할 내 유전자원에 관한 국가의 주권과 유전자원의 접근 기회를 결정하는 국가의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절차와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공유를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지침이 제공되지 않았다.

따라서 법적 안정성이 높고, 투명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어 질 높은 유전자원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이용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면서도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해서 가치 연쇄에 있어서의 유전자원의 이용에 적용 가능한 의무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로 인해 2010년에 일본 나고야(名古屋)에서 개최된 제10회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이하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었다.

ABS(Access and Benefit Sharing)의정서라고도 불리는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 3번째 목표인 ‘생물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의정서 당사국 관할 밖에서 유전자원이 사용될 경우 예측가능한 접근 조건 마련 및 유전자원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면서도 공평한 공유를 촉진하여 필수불가결한 투명성 있는 법적 체도를 규정하였다.

2017년 3월 13일자 법령 No.7/2017에 의해 포르투갈은 이미 2014년 5월 16일에 유럽연합에 의해 비준된 나고야의정서를 승인하였고, 이것이 동년 10월 12일부터 유효한 상태이다.

이베리아반도는 유럽에서도 가장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중의 하나이다. 포

1) 원문타이틀 : Decreto-Lei n.º 122/2017

원문링크: <https://dre.pt/web/guest/pesquisa/-/search/108192977/details/maximized>

르투갈 영토의 지리적 위치와 지구물리학적·토양기후적 특성은 지역과 시대에 따라 다른 강인함과 의의가 있는 인간의 개입에 의해 형태가 바뀌면서도 많은 적든 간에 사람의 손이 닿은 다양한 바이오토프(기후 조건, 생물적·비생물적인 요소의 분포 상태 등에 따라서 만 것과 구별되는 생식 장소, 야생 생물의 생식 공간), 생태계, 경관의 원천이 되어 그에 의해 다수의 유전자형을 지니는 다양한 종을 보유하는 다수의 서식지가 존재하게 되었다.

포르투갈에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오염을 동반하는 긴 해안선이 있으며, 동식물

가치라는 의미에서는 매우 풍부한 연안 및 해양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은 그 확대와 특징에 의해 유전자원의 연구, 생물탐사, 개발에 관해 상당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야생자원과 재배 또는 가축화된 자원으로 이루어진 유전유산인 유전자원이 많은 경제 분야에서 중요하면서도 점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학술계 연구자와 식물선별과 육종, 원예, 축산, 생물적 방제, 화장품, 식품·식료, 바이오테크놀로지, 제약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 등의 폭넓은 이해관계자가 연구개발 목적으로 유전자원을 이용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유전자원 이용 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면서도 공평한 배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유전자원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의무를 정하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511/2014이 2014년 4월 16일에 채택되었다. 이후 컬렉션 등록부, 이용자에 의한 의무준수 모니터링 및 모범관행에 관한 이행 규칙을 정하는 2015년 10월 13일자 위원회 이행규칙(EU)2015/1866도 채택되었다. 이들 문서는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이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주의 의무가 요구되고 있다.

이 때문에 유럽제도는 국내의 법적 규칙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2014년 4월 16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511/2014의 제6조 1항 및 제11조 1항에 규정된 책임기관, 내부관리 절차 및 적용 가능한 제재제도는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법령은 유럽제도의 국내 적용을 위한 조치를 구체화한 것이다.

특별자치지역 정부기관들의 견해를 청취했다.
따라서

헌법 제198조 1항의 규정에 의해 정부는 이하를 발령한다.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목적

1-본 법령은 이하의 규정을 국내법령으로 적용하는 것을 보증한다.

a) 유럽연합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의 이용자 의무준수 조치에 대한 2014년 4월 16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511/2014(이하 ‘EU규정’이라고 부른다.)

b) 컬렉션 등록부, 이용자에 의한 준수 모니터링 및 우수 사례에 관한 실시 규정을 정한 2015년 10월 13일자 유럽위원회 이행규칙(EU)2015/1866(이하 ‘EU 이행규칙’이라고 부른다.)

2-전 항의 목적을 위해 책임기관이 규정되고, 영토내의 모니터링 및 관리 조치가 결정되며, 컬렉션 등록 절차가 확립되어 EU규정 및 EU이행규칙 불이행에 대해 적용되는 제재 규정이 결정된다.

제2조

범위

이 법령은 농업, 삼림농업 및 경관 활동에 현재 또는 잠재적인 이익이 있는 토착 식물 재료의 등록, 보존, 법적 보호 및 이전을 위한 법적 제도를 다룬 2002년 4월 20일자 법령 No.118/2002의 조항들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EU규정에서 정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

정의

본 법령에는 EU 규정의 정의가 적용될 뿐 아니라 다음의 정의도 포함된다.

a) ‘유럽연합 시장으로의 ‘출시’란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이용에 근거

하여 개발된 제품이 유럽연합 시장에서 최초로 이용가능하게 되는 것이며, ‘이용가능하게 된다’는 것은 유럽연합 시장에서의 상업 활동 과정에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유통, 소비 또는 이용을 위해 어떤 수단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다. 출시에는 임상 시험, 실지(實地) 시험 또는 해충 저항성 시험 및 환자 또는 환자군에게 치료의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미인가 의약품 제공을 포함한 상용화 전의 시험은 포함되지 않는다.

b) ‘연구 자금 공여’란 상업 또는 비상업 기원 연구를 위한 조성금이라는 형태로의 재정 지원을 의미하며, 공공 기관 또는 민간기업의 내부 예산 자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c) ‘이용 결과’란 최종제품이 되기 전의 과정, 최종제품의 전(前) 단계 제품 및 최종제품에 편입되는 제품의 일부, 다른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하지 않고 제조·생산을 실시할 수 있는 모형이나 밑그림을 포함한 제품을 의미한다.

제2장

국가책임기관 및 심의회

제4조

국가책임기관

1 - 산림자연보호청(ICNF)는 제9조의 규정에 저촉되는 일 없이 본 법령 및 EU규정 적용을 위한 국가책임기관이다.

2 - 아조레스(Açores) 자치주 및 마데이라(Madeira) 자치주의 자치정부기관은 지역책임기관을 각각 지정한다.

제5조

ABS 심의회

1 - 유전자원의 접근 및 그 이용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면서도 공평한 공유에 관한 심의회(이하 ‘ABS심의회’라고 한다)가 본 법령 및 EU규정을 이행할 국가책임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다.

2 - ABS심의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a) 의장을 맡을, 국가책임기관의 대표자 1명
- b) 국립과학기술기금(FCT)의 대표자 1명
- c) 국립식품의약청(INFARMED)의 대표자 1명
- d) 국립농업수의학연구소(INIAV)의 대표자 1명
- e) 특허청(INPI)의 대표자 1명
- f) 식품수의총국((DGAV)의 대표자 1명
- g) 농업·농촌개발총국(DGADR)의 대표자 1명
- h) 경제활동총국(DGAE)의 대표자 1명
- i) 자연자원·안전·해사총국(DGRM)의 대표자 1명
- j) 아조레스 자치주 지역책임기관 대표자 1명
- k) 마데이라 자치주 지역책임기관 대표자 1명

3 - ABS심의회는 연1회 또는 국가책임기관의 발의 또는 위원들의 의뢰에 따라 추가로 소집한다.

4 - ABS심의회 각 위원들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그들이 대표하고 있는 기관의 관할 또는 관련 사항에 대해 언제든지 의견서를 낼 수 있다.

- a) 5일 이내에 제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된 적절주의 신고
- b) 15일 이내에 제9조 제2항 a)에서 규정된 이용자 감독 계획
- c) 30일 이내에 제10조에서 규정된 컬렉션 등록부에 등록 신청
- d) 30일 이내에 제11조에서 규정된 모범관행 인정 신청

5 - 국가책임기관의 통지 및 ABS심의회 위원들의 의견서는 첫 회의에서 승인된 내부 규칙에 따라서 전자적 수단에 의해 실시된다.

6 - 제4항에 규정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절차 진행을 막는 것은 아니다.

제3장

이용자 의무

제6조

유전자원의 접근, 이전, 이용에 있어서의 적절주의의무

1 - 이용자는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접근할 때 적절주의의무를 이행해야한다.

2 -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은 준거법에서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통고승인 획득 및 상호합의조건 체결에 따라 접근, 이전 및 이용해야 한다.

3 - 적절주의의무는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이 ABS에 대한 준거법에 따라 접근되고 상호합의조건에 근거하여 이익이 공정하면서도 공평하게 공유되는 것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4 - 전 항의 목적을 위해 이용자는 다음을 획득 및 보관. 후속 이용자들에게 이전한다.

a) 국제적으로 인정된 의무준수인증서 및 후속 이용자와 관련된 상호합의조건 내용 정보 또는

b) 국제적으로 인정된 의무준수인증서를 입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에 관한 정보 및 관련 문서

i) 유전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 접근 일시 및 장소

ii) 유전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설명

iii) 유전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을 직접 획득한 출처 및 유전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 후속 이용자

iv)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권리 및 의무의 유무, 여기에는 유전자원의 추후 이용 및 상업화에 관한 계약 의무도 포함한다.

v) 접근허가증(해당하는 경우)

vi) 해당될 경우 이익공유조항 등 상호합의조건

5 - 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불충분하고 접근 및 이용의 합법성에 관하여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경우, 접근허가증 또는 그에 상응하는 문서를 취득하고 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할 때까지 이용은 즉각 중지된다.

6 - 이용자는 유전자원 획득의 합법성, 해당될 경우 유전자원 이전 (transfer)의 합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정보를 이용

기간 종료후 20년간 가능하면 전자 형식으로 보관해야한다.

7 -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며, 자국의 관리 및 통제 하에 있으며 공지공 유영역에 있지만 9월 26일자 법령 No. 22/2005에서 승인된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 부속서1에 포함되지 않은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PGRFA)도 ITPGRFA 목적상 표준물질이전협정 조건의 대상임을 결정한 국가에서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PGRFA)을 획득한 이용자는 적절주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8 - 또한 이용자가 본 법령 제10조에 규정하는 유럽연합의 컬렉션 등록부에 포함된 컬렉션에서 유전자원을 획득할 경우에는 적절주의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

병원체

1- 2008년 1월 23일자 통지 No.12/2008에 의해 공표된 국제보건규칙(2005)에서 현재 또는 급박한 국제적인 공중위생의 긴급사태를 초래하거나 혹은 발생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병원체라고 특정되는 유전자원, 또는 2013년 10월 22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결정 No.1082/2013/EU에서 규정한 국경을 초월한 중대한 보건상의 위협이 되는 유전자원을 취득하는 이용자는 제6조 4항 및 5항에 기재한 의무를 늦어도 이하의 시점 중 빠른 시점에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a) 공중위생의 현재 또는 급박한 공중위생 위협이 종식되고 나서 30일 후 또는

b) 유전자원 이용개시로부터 90일 후.

2 - 제6조 4항 및 5항에 정해진 의무가 상기 명시된 기한내에 이행되지 않는 경우 그 이용은 중지된다.

3 - 1항에서 규정한 유전자원을 이용한 제품의 출시, 등록 또는 판매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6조 4항 및 5항에 규정된 모든 의무를 즉각적으로 이

행해야 한다.

4 - 적시에 사전통고승인 및 상호합의조건을 맺지 않았을 경우, 제공국과 합의에 도달하기 전까지 이용자는 병원체를 이용한 일체의 개발에 관한 어떠한 종류의 배타적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

모니터링

1 -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이용에 관한 연구자금 수급자는 EU이행규칙 부속서Ⅱ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ICNF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신고서 양식을 기입하여 EU규정 제7조 1항에 따른 적절주의 의무를 이행했음을 국가책임기관에 신고한다.

2 - 1항에 언급된 신고는 첫 1회차 연구자금을 수령하고 자금제공을 받는 연구에 이용되는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전체를 입수한 후에 이루어지며, 최종보고서 제출 후 또는 최종보고서가 없는 경우 프로젝트가 끝난 이후가 되어서는 안 된다.

3 - 유전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한 제품 개발의 최종 개발 단계인 경우 이용자는 EU이행규칙 부속서Ⅲ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ICNF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신고서 양식을 기입하여 적절주의 의무를 이행했음을 국가책임기관에 신고한다.

4 - 3항에 언급된 신고는 아래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 a)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한 개발상품의 출시 승인 또는 등록 신청
- b)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한 개발상품이 유럽연합 시장에 처음으로 시판되기 전 요구되는 통지
- c) 시장판매 승인, 허가,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한 개발상품의 유럽연합 시장 첫 시판
- d) 이용의 결과를 유럽연합내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기타 방법으로 판매

및 이전하여, 이 사람이 전 항까지 언급된 것을 실시하는 경우

e) 유럽연합에서의 이용이 종료되고 이용 결과를 유럽연합 외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기타 방법으로 판매 및 이전

5 - 국가책임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용자는 전 항까지 언급된 해당 적절주의의무 신고에 사용한 정보의 증거 문서를 제시한다.

제9조

점검

1 - 검사 및 점검에 대한 각각의 관할 범위 내에서 이하 기관은 본 법령 및 EU규정 적용을 점검하기 위해 국가책임기관과 협력한다.

- a) 경제식품안전청
- b) 국세·관세청
- c) 관할지에 따른 공화국국가경비대 또는 공공안전경찰
- d) 농업·해사·환경·국토검사청
- e) 교육·과학검사청
- f) 국립식품의약청(INFARMED)
- g) 아조레스 자치주 지역책임기관
- h) 마테이라 자치주 지역책임기관

2 - 국가책임기관은 전 항에서 언급한 기관과 연계하여

a) 리스크 기반 접근법을 이용하여 이용자 점검 계획을 수립한다. 이 계획은 정기적인 점검 대상이 되며, 전 항에서 언급된 기관의 동의가 필요하다.

b) 이용자 점검 계획에 따라 또는 본 법령 및 EU규정 불이행에 대한 정보가 있을 경우 이용자 감독 활동을 실시한다.

c) EU규정 적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그리고 법률로 명백하게 다른 기관에 위임되어 있지 않은 한 어떤 형태로든 다른 점검 활동을 실시한다.

3 - 이용자는 전 항의 점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고, 시설들에 대한 접근 제공 및 그 범위내에서 요구된 서류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

4 - 제13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점검 시행 기관이 미비한 점을 검출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가책임기관에 통지하고, 국가책임기관은 이용자에게 시정활동 또는 시정 조치를 통지한다.

5 - 미비점의 성격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은 다른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6 - 제2항 b) 및 c)에서 언급된 점검 기록은 이를 실시한 기관에 의해 특히 그 성질 및 얻어진 결과에 대해 매년 국가책임기관에 통지된다.

7 - 국가책임기관은 점검 기록물 및 4항에서 6항에 언급된 시정 활동 및 시정 조치에 관한 기록을 적어도 5년간은 가능한 한 전자 형식으로 보관해야 한다.

제4장

컬렉션 및 모범관행

제10조

컬렉션 등록부

1 - 컬렉션 또는 그 일부를 보유하는 보유자는 EU규정 제5조에서 마련된 컬렉션 등록부에 컬렉션 전체 또는 일부를 등록하기 위한 신청서를 국가책임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2 - 컬렉션 또는 그 일부를 등록부에 게재하기 위해, 컬렉션 보유자는 컬렉션이 EU규정 제5조 3항에 정해져 있는 승인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제시해야 한다.

3 - 전 항까지의 목적을 위해서 컬렉션 또는 그 일부의 소지자는 이행규칙 부속서 I 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ICNF 웹사이트에서 게재된 신청서 양식을 기입하여 신청 한다.

4 - 등록부에 게재된 컬렉션 보유자는 등록전에 신청한 정보에 어떤 변경

을 할 경우, 특히 그 변경이 EU 규정의 승인 요건 충족에 영향을 미칠 경우, 국가책임기관에 영업일 10일 이내로 통지한다.

5 - 국가책임기관은 등록부에 게재된 각 컬렉션 또는 그 일부가 EU규정에 정해진 승인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6 - 전 항에 기술된 검증을 위해 국가책임기관은 다음을 수행할 수 있다.

a) 현지 점검을 실시한다.

b) EU규정 제5조 3항의 의무준수 여부를 제시하는 것과 관련된 컬렉션 또는 그 일부의 특정 문서 및 기록을 조사한다.

c) 해당 컬렉션의 특정 유전자원 샘플 및 관련 정보가 EU규정 제5조 3항에 따라 문서화가 되었는지 조사한다.

d) 컬렉션 보유자가 EU규정 제5조 3항에 의거한 유전자원 이용을 위해 정기적으로 제3자에게 유전자원을 제공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한다.

e) 컬렉션 보유자, 직원, 외부기관 검증 담당자 및 컬렉션에서 샘플을 입수하는 이용자 등 관계자라고 간주되는 사람과 면담을 한다.

7 - 4항에서 6항의 규정에 따라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컬렉션 등록부에 게재된 컬렉션 또는 그 일부가 2항의 규정인 승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또는 충족시키기를 포기한 사실이 증명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은 해당 컬렉션 보유자와 협의한 후 시정 조치 또는 대책을 결정한다.

11조

모범관행 인정 신청

EU규정 제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모범관행 인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행규칙 부속서Ⅳ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ICNF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신청서 양식을 기입하여 유럽집행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제12조

협력 및 보완 조치

국가책임기관 및 ABS 심의회 기관들은 유전자원 및 생물다양성 분야에 대한 연구실, 대학, 박물관, 협회, 중소기업 등 공공 기관 및 연구개발 기관들과 협정, 조인, 기타 협력 활동을 다음의 목적 아래 실시할 수 있다.

a) 이들 기관이 나고야의정서 준수 및 본 법령 및 EU규정 실시에 관한, 특히 불이행 및 위반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국가책임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b) 본 법령의 대상자, 즉 유전자원 이용자들이, 과학연구자나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모범관행 촉진, 분야별 행동규범 또는 모델계약조항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한다.

c) 모든 이해관계자가 생물다양성협약, 나고야의정서 및 EU규정의 국가적 이행 의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인식제고, 훈련 활동들을 촉진하고 장려한다.

d) 컬렉션 및 이용자들의 유전자원 이용을 모니터링 및 추적하기 위한 정보, 통신 도구, 시스템 등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한다.

e)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이용자와 제공자가 어떤 방식으로든 유전자원 이용을 통해 직접적인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한다.

제5장

감독 및 제재 규칙

제13조

감사

본 법령 및 EU규정의 의무준수에 대한 감독은 제9조 제1항 및 관련 조항에 따라 명시된 기관에 의해 실시되며, 그 기관은 언제든지 관할 범위내에서 본 법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 및 정보를 제공할 것을 이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위반

1 - 8월 29일자 법령 No.50/2006(이하 '환경위반법'이라고 부른다) 조항에 규정된 상당히 중대한 위반이 되는 경우는,

- a) 유전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 이용자가 적절주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6조 1항 및 4항에 대한 위반
- b) 병원체 유전자원 이용자가 적절주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7조 1항에 대한 위반
- c) 병원체 유전자원의 이용 중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7조 1항에 대한 위반
- d) 병원체 유전자원을 이용한 개발 제품의 출시 또는 판매 허가 신청 상황에서 적절주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7조 3항에 대한 위반
- e) 병원체를 이용한 개발에 대해 이용자가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혹은 배타적 권리 부여 신청을 제시할 경우. 제7조 4항에 대한 위반
- f) 요청에 따른 증거 문서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제8조 5항에 대한 위반

2 - 환경위반법 조항에서 규정된 중대한 위반이 되는 경우는,

- a) 연구자금 수급자가 적절주의의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8조 2항에 대한 위반
- b) 제품 개발의 최종단계에서 기한 내에 적절주의의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8조 4항에 대한 위반
- c) 시설에 대한 출입 거부를 포함해 점검 실시에 따른 협력을 이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제9조 3항에 대한 위반
- d) 이용자가 국가책임기관으로부터 통지된 시정 활동 또는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9조 4항에 대한 위반

3 - 환경위반법에 조항에서 규정된 경미한 위반이 되는 경우는

- a)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정보를 이용기간 종료 후 20년간 보관하는 의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제6조 6항에 대한 위반
- b) 컬렉션 보유자가 컬렉션이 승인 요건을 충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경을 통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0조 4항에 대한 위반

제15조

예방적 압수

점검을 담당하는 기관은 환경위반법 규정에 따라 예방적 압수를 할 수 있다.

제16조

절차 보고, 지시, 결정

- 1 - 국가책임기관 또는 제9조 1항에서 언급된 기관들은 3항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반 보고 조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 2 - 국가책임기관은 다음 항의 규정에 저촉되는 일 없이 본 법령 규정의 위반 행위에 대해 벌금 및 부수적 제재를 지시, 결정 및 적용할 책임이 있다.
- 3 - 농업·해사·환경·국토검사청 및 경제식품안전청 및 교육·과학검사청은 전 항에서 언급된 것의 보고 조서 작성에 대해 항상 책임이 있다.

제17조

공표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 상당히 중대한 환경상의 위반 행위와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은 적용되는 벌금의 액수가 관념적으로 적용 가능한 벌금의 상한액의 반액과 동일한 액수이거나 또는 그 이상인 경우 환경위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공표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제18조

부수적 제재

- 1 - 벌금 적용을 담당하는 기관은 환경위반법에 따라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부수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2 - 가해진 부수적 제재가 자발적으로 준수되지 않은 경우 특히 위반 행위 전의 상황으로 회복할 의무가 있는 경우, 국가책임기관은 위반자에 대해 직접 행동하고 필요하면 그 각각 비용을 세무집행 절차를 거쳐 강제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

3 - 전 항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책임기관이 발행한 지출금액증명서가 집행증서가 된다.

제19조

벌금 배분처

부과된 벌금 수입은 이하와 같이 배분한다.

- a) 국가에 60%
- b) 위반 지도 및 징벌 결정 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에 20%
- c) 조서를 작성한 기관에 20%

제6장

최종 규정

제20조

자치주

1 - 본법령의 규정은 아조레스 자치주와 마테이라 자치주에서는 주의 법령에 따라 도입되는 지역적 특수성을 위한 적합성에 저촉되는 일 없이 적용된다.

2 - 자치주에서 징수된 벌금 수입은 이들 주의 독자적인 수입이 된다.

제21조

효력

본 법령은 공포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17년 6월 8일에 내각-아우구스트·에르네스토·산토스·시우바, 아우구스트

에르네스토·산토스·시우바, 마리오·조제·고메즈·드·프레이타스·센테노, 마리아·콘스탄사·디아즈·우르바노·드·소우자, 프란시스카·에우제니아·다·시우바·디아스·반두넨, 마누엘·프레데리코·토자우·드·바우사시나·에이토르, 아다우베르토·칸포스·페르난데스, 파울로·아레산도레·도스·산토스·페레이라, 조앙·페도로·소에이로·드·마토스·페르난데스, 루이스·마누엘·카포우라스·산토스, 아나·파우라·멘데스·비토리노-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승인되었다.

2017년 7월 11일 공포

공포하라.

공화국 마르세로·레베로·데·소우자

2017년 7월 18일 연서

수장 안토니오·루이스·산토스·다·코스타